

제주도의 대북한 농업부문 교역 및 교류협력 증대 방안

강 지 용, 고 재 모*

제주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협성대학교 유통·통상학부 국제통상전공*

Jeju's Trade and Cooperation in Agriculture with North Korea and Plans for Its Extension

Ji Yong Kang, Je Mo Koh*

Dept. Agricultural & Resource Economics, Che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International Trade, Hyupsung University*

ABSTRACT : As a local autonomy government, Jeju represents the new model of trade cooperation with NK by sending mandarins and carrots after the cities like Kangwondo, Jeonbuk etc.

Since 1999 Jeju's trade and cooperation enterprise with NK have been more active than any other autonomy governments and brought fruitful results. As a reward of encouragement, NK accomplished a visit to NK twice only this year. According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way of Jeju's trade and cooperation with NK.

To support farm products like mandarins and carrot in trade is good for both Jeju and NK. For Jeju it can bring about the effect of the stability in farm products and for NK it can not only support insufficiency of farm products but supply tropic fruits in circumstances that it's hard to purchase them because of foreign exchange shortage.

Except Jeju mandarins and carrots, some vegetable as well as onions and garlies which have the fluctuation in price due to overproduction will be able to supported under consideration of the given conditions of SK-NK.

Next, indirect-trade or cooperation enterprise needs to be considered except direct-trade or cooperation enterprise. For example, there are cooperation farming or contract cultivation in NK, union advance in overseas market, supports in agricultural techniques and so on.

Among these cooperation farming or contract cultivation in NK has many advantages in clearness of the proof of origin and varieties of how to deal with products, so we can draw good plans if we examine throughly.

서 론

북한경제는 1990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1999년 이후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더 이상 악화될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성장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북한경제의 침체요인은 첫째, 내적 요인으로 계획경제와 자립경제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 둘째, 외적 요인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에 의한 시장상실과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

던 북한의 경제난은 국가의 기능뿐만 아니라 집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당의 기능마저도 크게 약화시키고 있을 정도라고 대내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식량난의 심화는 사회전체의 기강마저 무너뜨려 무정부 상태로까지 표현되고 있을 정도이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난국타개를 도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대는 남한이 될 수밖에 없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국제기구, NGO 등의 활동도 대북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대북 정책이 정치적, 군사적 사안에 민감하고, 국제기구나 NGO의 활동이 계획성·지속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대북 교류 및 협력사업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통로 외에 틈새 전략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은 통일기반의 저변확대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주도는 강원도, 전북 등에 이어 감귤·당근 등을 북한에 보내면서 대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은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그 활동성이 강하고 성과 또한 풍성하다. 제주도는 1999년 감귤 4천여톤을 북한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감귤 13,572톤, 당근 6,000톤 등 총 2만여톤에 이르는 농산물의 대북 지원을 이루었다. 제주도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북한은 금년에만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민의 북한방문을 성사시켰고, 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18명으로 구성된 북한 경제시찰단이 11월 2일, 3일 양일간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북한간 교류협력 확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주도의 대북 농산물 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주도의 대북한 농업부문 교류 및 교류협력 증대 방안을 검토하고 농업부문에 중점을 두고 농산물의 직접교역 혹은 간접교역 방식을 통한 교류협력분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북한 농산물 직접교역 및 협력분야 검토

제주도는 우리 나라에서 아주 특이한 농업경영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시장개방 이전에는 맥류, 잡곡, 콩, 고구마, 유채, 참깨와 일부 채소류의 재배면적 비중이 높았는데 시장개방 이후 이들 재배면적은 크게 감소한 반면, 감귤, 감자, 화훼, 당근, 마늘, 양파, 쪽파 등의 월동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감귤은 사실상 제주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작물이다. 감귤 재배면적은 1970년 5,002ha, 1980년 14,154ha, 1990년 19,414ha, 2000년 25,796ha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0년 기준 전체 과수 재배면적(26,274ha)의 98%, 식량작물을 포함한 총 재배면적(63,620ha)의 41%를 감귤 재배면적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감귤의 비중은 크다. 감귤 재배면적의 증가는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1990년 49만톤에서 2000년에는 59만톤¹⁾으로 연간 약 1만톤씩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제주도의 특성은 대북 협력관계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즉 중앙정부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산물 교류 혹은 협력사업이 대부분 식량이나 투입재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비해 제주도는 감귤과 당근이라는 과채류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제주도에서 감귤과 당근이라는 두 품목의 대북 지원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비경제적 요인이라면 남북화해 및 협력사업에 지방자치단체로서 제도주도 일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요인이다. 단순히 감귤과 당근의 생산량이 많아 지원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들 품목의 국내 공급이 과잉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우선 감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국내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수요는 대개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고, 설상가상으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감귤과 대체효과가 큰 오렌지, 참다래,

1) 노지감귤 생산량과 하우스 감귤 생산량을 합한 수치임.

자몽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들 품목의 가격하락이 현저히 나타난 것이다. 특히 감귤생산은 해거리를 하는 품목인데 많이 생산되는 해는 가격하락 때문에 농가에서는 과수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근도 한편에선 국내 생산면적이 증가하고 다른 한편에선 많은 양이 수입되어 들어오면서 감귤과 유사한 가격하락 현상을 겪고 있다.

표 1. 감귤류와 당근의 수출입량. (단위 : 톤)

구분	감귤류		당근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1	1,093	6,818	70	712
1993	1,327	8,963	129	-
1995	1,164	27,398	6,749	263
1997	3,310	48,646	48	2,902
1999	6,650	36,179	955	4,556
2001	9,091	98,243	726	13,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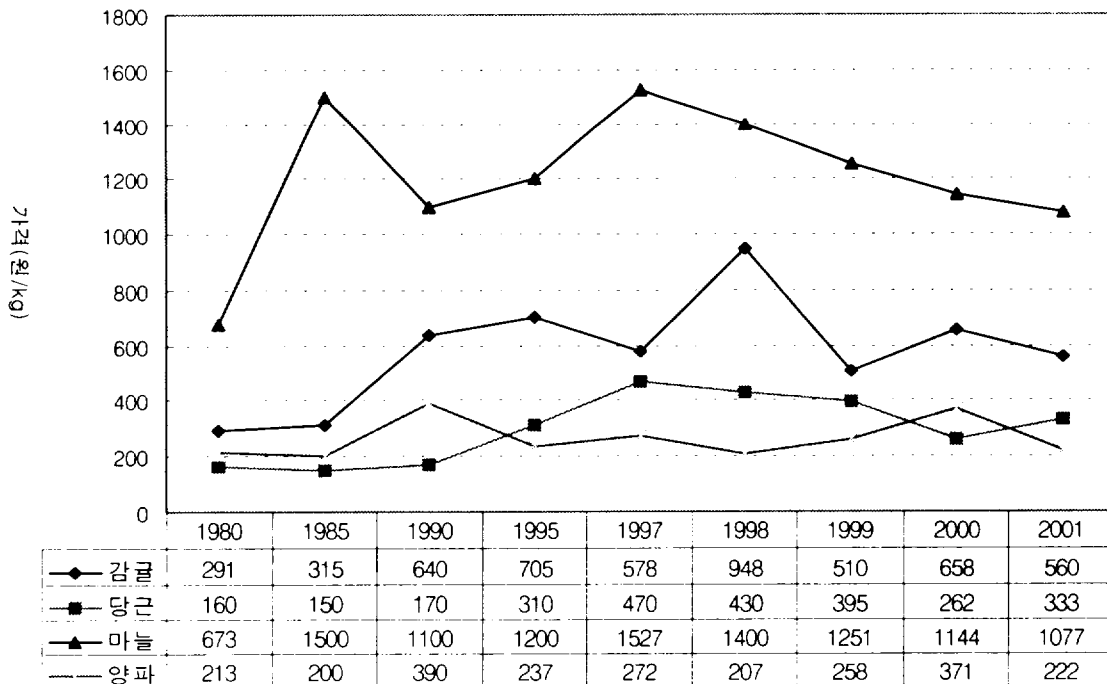
주 : HS6단위 기준, 감귤류는 오렌지, 레몬 등 포함(신선, 건조) 0805. 당근은 당근과 순무(신선, 냉장) 070610

자료: 종합무역정보서비스, 한국무역통계 (www.Kotis.net/main/tradedb.html).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 20여년간 수 차례의 가격(농가 판매가격 기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감귤과 마늘은 세 배 이상의 가격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당근과 양파도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두 배 정도의 가격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교역이나 지원에 감귤이나 당근 등과 같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우선 남한에서는 해당 상품의 유출로 인한 가격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북한에서는 부족한 농산물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외환부족으로 열대성 과일을 구입하기 힘든 상황에서 열대성 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다. 감귤이나 당근 이외에도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파동이 심한 양파, 마늘 등을 비롯한 일부 채소류도 남북한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북한 농산물 지원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여건에 따라 품목을 달리하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북지원 전담반이 구성되어 매년 작황과 가격여건을 점검

〈그림 1〉 제주도의 주요 과채류 가격변화



자료 : 제주도, 농업특작과(2002).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대북한 협력사업은 감귤과 당근을 보내면서 시작되었고, 다행히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최근까지도 지속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교역이나 협력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감귤과 당근 이외 다른 작목에 대해 간단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곡물생산 :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 품목은 곡물일 것이다. 그러나 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과 두류 및 서류는 남북한의 수급상황, 제주도의 생산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교역이나 협력사업의 대상으로 적당하지 않다.

○ 과수 : 북한의 과수 및 채소는 각 시도별로 주산단지를 형성하고 있고, 인프라도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과수재배 면적은 1977년이래 30만ha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사과와 배를 주로 재배해 왔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감귤위주의 과수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개방으로 감귤의 수요와 가격변동이 예상되므로 지금까지와 같이 감귤지원사업은 지속된다면 남북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채소 : 북한의 채소 재배면적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배추로 4.2~4.4만ha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이 고추로 2.1~2.2만ha 이다. 기타 토마토, 마늘, 호박, 양파 등이 7~9천ha 정도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한국의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채소류는 남북한간에 상당한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²⁾. 제주도는 최근 감귤, 감자, 화훼류와 함께 당근, 마늘, 양파, 쪽파 등 월동채소류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해 왔다. 당근 이외 가격변화가 큰 품목을 선정하여 이들 품목의 대북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특용작물, 임산물, 한약재 등 : 대북 경제개방정책이 시행된 이래 남북한간의 농산물 교역규모는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 중에서도 특용작물, 임산부산물, 한약재 등의 교역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특용작물, 임산부산물, 한약재 등은 남북한간 가격차가 현격히 존재한다. 따라서 제주도가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이들 상품의 재배 및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한다면 식량과 관련된 교역 또는 협력사업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주도의 특수한 지리적, 생산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식량의 교역이나 협력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감귤을 포함한 과수, 당근, 양파, 마늘 등의 채소, 일부 특용작물 등의 교역이나 협력사업은 가능하다. 특히 과수와 채소는 노동집약적 경영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원의 형태를 넘어서 기술지원, 계약재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만약 농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면 가공·수송산업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 현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클 것이다. 특히 공단조성, 관광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들 사업분야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안정적 공급원도 될 수 있으므로 제주도가 주체가 된 과수와 채소분야의 협력형태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대북한 농산물 간접교역 및 협력분야 검토

가. 북한내 공동영농 혹은 계약재배의 모색

남북한간의 협력사업이나 교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상품성이 있는 반출입 가능한 품목이 부족한 데 있다. 기존의 협력사업은 남한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이었으며, 교역은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이라는 도식이었다. 이러한 고착된 방식만 가지고는 교역이나 협력의 확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단순한 반출입의 형태를 뛰어넘어 협력과 교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북한내 공동영농 혹은 계약재배를 고려할 만 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남북한간의 교역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북한

2) 신동완(1998), p.268~269.

내 공동영농 혹은 계약재배가 제시된 바 있다.³⁾ 북한내 공동영농은 비교적 계약조건이 적으면서 일방적 지원의 형식을 띠게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 계약재배는 남북한 당사자가 생산과 생산물의 처리 등을 계약하고 공동영농을 하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계약재배가 공동영농에 비해 보다 구체성을 띤 협력의 방법이다. 본문에서는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계약재배는 생산물의 종류와 생산방법, 생산물의 처분권 등을 남북한이 사전에 합의하여 계약하고, 그 계약을 바탕으로 영농이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교역이나 교류가 각종 정치적인 이유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역과 협력의 일환으로 계약재배를 추진한다면 그 자체로서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계약재배의 가능 분야는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유재현씨는 계약재배의 가능품목으로 농산물 중에서 양파, 마늘, 고추, 배추, 무 등 채소류, 금강산 관광객들을 위한 수요충족품목, 잎담배, 유지류, 만성적인 국내공급 부족품목으로서 한약재 등을 지적한 바 있다.⁴⁾ 일반적으로 계약재배의 대상은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한다면 식량작물의 계약재배가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경제성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한의 일방적 지원에 의한 계약재배만이 그 가능성이 있다. 일부 수입잠곡에 대한 대체효과를 기대하여 북한과의 계약재배가 성사될 수 있으나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과수와 채소의 계약재배는 북한의 기반시설이나 기술수준으로 볼 때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농자재의 적기공급과 반출입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용작물, 임산물, 한약재 등의 계약재배는 수입 대체재로서 반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남북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잠사생산

의 계약재배가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잠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활용으로 수요마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과거 대량재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도 축적되어 있는 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른 작물에 비해 잠사생산이 가장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필요한 노동력도 연중 고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집중적으로 필요할 따름이다. 특히 노동력 이용면에서 일반 작물재배와 결합관계에 있지 않다. 또 일반 작물의 경작이 어려운 곳에서도 뽕나무의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잠사생산과 관련된 계약재배는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대상분야를 확대해 보면 계약양식어업이 매우 유망한 협력분야라고 판단된다. 남한의 수산물 생산은 1986년 366만 톤의 최고 생산수준을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정체하고 있다. 수출도 1988년 19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어장황폐화로 인한 생산여건의 악화와 해외시장에서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부분 해역은 아직 청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유류 부족과 선박 노후화, 양식기술의 낙후 등으로 해양어로와 양식업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남한에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북한 어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국내 반입은 물론 해외 수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영수산과 LG상사는 수산분야에서 계약재배의 형식으로 협력사업을 모색한 적이 있다.⁵⁾ 태영수산과 LG상사는 북한의 동해안에서 큰가리비 양식사업을 시도하였지만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수산물 수입시장인 일본이 인접해 있고, 남한의 양식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생산후 처리문제가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수산물의 경우 현재의 시장여건과 기술조건이라면 수출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

3) 유재현 외(1999), 고재모 외(1999) 참고.

4) 유재현 외(1999), p.53. 본문에서는 고재모 외(1999), pp.62-63의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함.

5) 이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고재모 외(1999), pp.40-42 참고 바람.

표 2. 계약재배 형태별 장단점 비교.

구 분	①단순형		②복합 추진형	③선후 구분형
	정부주도	민간주도		
계약재배 추진 성사의 가능성	○	×	○	△
북한의 농업생산 및 기술수준 제고효과	○	○	△	×
참여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확보	-	×	○	△
정부의 지원 부담	×	-	○	△
정치적 리스크	○	×	×	△
분쟁발생의 가능성	○	△	×	△
상호 신뢰성구축 및 관계개선 효과	△	△	○	△

주 : ○ 유리, △ 보통, × 불리

자료 : 고재모 외(1999), p.72.

다. 수산분야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계약재배의 추진주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일 필요는 없다. 제주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주도가 후원하지만 사실상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를 설립하고 동 본부가 중심이 되어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와 협력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이다. 계약재배의 추진주체는 민간기업일 수도 있고, 이 때 해당기업은 계약의 범위에서 형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존립의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다면 계약재배라고 해서 영농사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추진의 주체뿐만 아니라 형태에 있어서도 영농위주의 단순형 계약재배 이외 영농과 농산물 가공산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복합형 계약재배와 제3국에서의 시험적 계약재배 후 북한에서의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선후구분형 계약재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⁶⁾

- 단순형 정부주도의 경우 : 정부의 무상공여 형태를 전제로 계약재배가 추진된다면 계약재배 가능에서부터 신뢰성 구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담과 직결된 필요경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 단순형 민간주도의 경우 : 경제성 있는 사업분

야를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일단 성사된다면 북한내 경영마인드 확산과 생산성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적 리스크도 적고 장기적으로 신뢰구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복합형 :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기업 주도로 성사될 수 있다면 신뢰성 구축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한 대상을 어떻게 찾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경비부담과 생산물의 처리 등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선후구분형 : 북한의 농업생산능력을 직접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나 정부가 적은 비용으로 기업을 지원하여 해외에서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과의 협력형태의 한 형태로서 계약재배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농업협력과 교역의 두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예외사항 또한 존재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의 편익을 위해 수행하는 일반적 계약재배의 성격을 북한과의 계약재배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계약재배 자체의 성사마저도 불투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당국이나 농민들이 아직은 완전한 상업적 이윤추구 행위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재배를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비농업분야의 경험이나 교역 혹은 위탁가공 등에 비해 실행상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업분야 계약재배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

6)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재모 외(1999), pp.72~76 참고 바람.

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비정치적 접근의 가능성이다. 북한과의 계약재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북한의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농업생산능력의 확대라는 단순한 목표의 설정이 가능하다. 북한이 가장 바라는 협력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적 이념의 개재 여지를 최소화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둘째, 원산지 증명의 명확성이다. 일반 상품과 농산물의 교역 과정에서 가장 큰 예외사항 중 하나는 북한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인데 적어도 계약재배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위한 수고를 절약할 수 있다. 즉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반입할 때 위장반입 문제와 교역이익의 해외이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⁸⁾

셋째, 비용의 저렴성이다. 언어를 포함한 문화적 동질성이 잔존하므로 기타 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별도의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북한은 1970년대 4화운동을⁹⁾ 통해 농업경영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그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계약재배의 경우 계약과정에서 지역선정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지기반 조성을 비롯한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회피할 수 있다.

넷째, 생산물 처리의 다양성이다. 생산물에 대해 자체소비, 남한으로의 반출 혹은 제3국으로의 수출 등 다양한 처리 방법이 가능하다.

다섯째, 최소한의 대외 의존성이다. 필요한 기술은

남북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익숙해 있고, 자금소요액 또한 크지 않아 대외 의존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

여섯째, 결과의 조기 가시성이다. 생산의 결과가 1년 이내 분명한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상호 신뢰의 구축에 도움이 된다.

일곱째, 효과의 활용성이다. 계약재배의 결과 바람직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입업, 수산업 등 타 분야로의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계약재배는 북한의 토지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북한의 토지이용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토지소유권 획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토지 이용권의 확보는 가능하다. 북한은 1992년 제정한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인의 토지이용권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의 토지를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외국인투자법 제정 이후 토지임대법과 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토지임대차 관련 세부사항을 체계화하였다.

북한은 토지임대법에서 "외국인과 개인 및 북한영역 밖의 조선 동포들이 북한의 토지를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국토관리기관의 통일된 관리를 받아야 한다.¹⁰⁾ 국토관리기관은 중앙 국토관리기관과 지방 국토관리기관으로 구분된다. 중앙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의 감독과 통제, 그리고 지방 국토관리기관이 제안한 토지임대차 계획의 심사 및 승인업무를 담당한다. 지방 국토관리기관은 도(道) 국토관리기관과 시·군 국토관리기관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토지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행하고 후자는 토지임대차 관련 등록업무를 수행한다.

북한에서 토지이용권을 확보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국토관리기관과 단순히 임차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합영·합자를 통해 북한측에서 현물출자 하는 방법이다. 토지임차의 경우 임차기

7) 고재모 외(1999), pp.25~26 참조.

8) 김영훈 외(1998), p.72에서는 원산지 증명의 명확성, 즉 위장반입과 수익의 해외이전 방지를 계약재배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9) 북한은 1971~76년 기간 중 경제개발 6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농업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및 화학화 등을 추진했음. 1974년 전답의 수리화와 농장의 전기화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음. 즉 농업관련 기초시설은 1970년대 중반에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것으로 평가됨. 최근 알려진 바와 같은 농경지의 훼손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실시된 자연개조 5대 방침, 다락밭 건설 등이 이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10)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하여 신의주 특별행정구, 금강산 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는 특별히 설치된 토지관리기관의 관리를 받음.

간은 50년이 상한이며,¹¹⁾ 현물출자의 경우 합병·합자기업 존속기간 동안 계속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토지의 임차방법은 협상, 입찰, 경매 등의 방법이 가능하나 입찰과 경매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도(道) 국토관리 기관과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계약재배의 경우 임차료가 비싼 자유무역지대 보다는 일반 농촌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토지이용권은 임차기간 내에 무단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만약 토지임대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내에 토지이용권을 취소하는 경우 임대기관은 6개월 이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여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 주거나 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¹²⁾

나. 해외시장 공동진출

현재의 남북한 여건에서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앞 절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내에서의 공동영농이나 계약재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해외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흥택기씨도 남북한 공동의 해외 농산물 시장개척을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남한기업에 의한 수출대행 → 계약재배에 의한 수출 → 합작경영에 의한 수출 → 공동수출체계형성 등의 단계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¹³⁾

어떠한 방식에 의하던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처리는 첫째, 북한 자체 소비용, 둘째, 남한으로의 반출용, 셋째, 제3국 수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생산물의 북한내 소비용 처리를 살펴보자. 북한내 소비용 처리는 무상공여와 판매라는 두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무상공여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판매의 경우 몇몇 절차가 필요하다. 합병기업의 경우 외화수지균형을 맞출 것을 조건으로 생산제품의 일부를 북한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나 국가승인이 필요하고 반드시 부분적인 내수판매만 가능하다. 경제특구, 자유경제무역지대 등에서는 외국인기업이 동 지대 내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초보적이거나 시장가격의 형성과 내수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북한이 가격개혁을 하고 시장개방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내수판매가 쉬워졌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은 농산물과 대중 필수품의 가격을 국가에서 결정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법적·제도적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시장기능, 소득수준, 유통망 등을 고려할 때 내수용 판매는 사실상 어려운 전망이다.

다음엔 남한으로의 반출용 처리를 살펴보자. 특용작물, 임산부산물, 한약재 등 소량 다품목 형태의 국내반입에는 거의 문제가 없으며, 특히 북한산이 제3국의 수입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반입시 국내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반입 농산물은 내부거래로 규정되어 무관세 반입이 가능하므로 대량의 물량반입은 남한내 관련 기업이나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중국에는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북한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다. 아직 농산물의 반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산 목장갑의 반입으로 국내 생산업체가 거의 도산한 사례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북한은 1980년대 초반부터 이미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한경제의 심각한 애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책은 무역을 확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정무원은 '대외경제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1) 최근 북한이 발표한 신의주 특별행정구(2002.9.12), 금강산 관광지구(2002.10.23), 개성공업지구(2002.11.13) 등에서도 토지의 임대기간은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12) 토지 임대차와 관련된 절차도, 통지의 용도구분과 임대료 등은 고재모 외(1999), pp.31~33을 참조 바람.
13) 흥택기(2000), 137.

“변천된 현실에 맞게 세계 여러 나라들과 대외무역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수출을 첫 자리에 놓고 ... 수출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 총화사업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이렇게 볼 때 북한이 가장 바라는 방향이면서 남한의 공동영농 혹은 계약재배 당사자도 선호하는 방안이 생산물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산물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목표시장을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 등 선진국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동맹국가로서 교역상의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중국, 북한·러시아간에는 아직도 우호무역이 잔존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원산지 규정과 특혜관세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아울러 동절기 잠재수요를 파악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한다면 수출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왜냐하면 엠바고(embargo)¹⁵⁾, 원산지규정, 품질, 납기, 관세율 등에서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관세율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선진국은 북한산에 대해 최혜국대우가 아닌 고율의 일반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¹⁶⁾ 또 이들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선진국 시장에서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 기타 개도국 상품과 경쟁을 해야 한다면

품질과 가격 모두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추진 주체가 누구냐를 불문하고 초기단계에서는 북한의 자체 소비용을 생산하여 북한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남한으로의 반출용이나 제3국 수출용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은 북한내 생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즉 제주도산 농산물을 북한의 대외무역업자와 제주도의 관계자가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아직은 유효수요가 부족하지만 거대한 러시아 시장과 중국의 동북시장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북한의 관계자를 개입시키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유효한 북한·러시아, 북한·중국간의 우호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대부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교역의 주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리한가는 의문이다. 민간기업이 주체가 된다면 최근 북한의 개방정책에 편승하여 공동영농이나 계약재배에 의한 방법보다는 농산물 가공부문에 대한 직접투자를 추진하여 그 생산물에 대한 해외시장 공동개척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해외시장 공동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9월말까지 대중국·일본 무역에서 전년동기 대비 26.8% 증가한 3.1억 달러로 잠정 평가되었다. 대중 무역액은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221.3%)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35.1%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대일 무역액 역시 수출 급증(22.3%)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3.5% 증가한 1.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¹⁷⁾ 금년 상반기 중 북한의 대중국·일본 무역은 총 4.9억 달러로 전년동기보다 0.6% 증가에 그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대외 무역이 급증한 것이다. 이는 종래 가격구조 왜곡으로 인한 공장·기업소의 수출기피현상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없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품목별 내용을 보면 대중국 수출 급증 품목은 어패류

14) 「민주조선」(1992.2.26), 서재진(1992), p.136에서 재인용.
 15) 미국의 경우 '적성국가와의 무역금지법(Trade with the Enemy Act)'에 의거하여 북한산 상품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16) 미국은 1999년 3단계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했음. 1단계는 미국기업의 해외법인 대북투자 허용,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해제, 대북 수출입 가능품목 확대 등임. 2단계는 미국기업의 대북투자 전면허용, 대북수출입 규제 전면 철폐, 국제금융기구가입 및 개발자금융원조 허용 등임. 3단계에 가서야 북한의 MFN(최혜국대우) 부여와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특혜제도가 포함되어 있음. 물론 이상의 경제제재완화 조치도 북한의 핵동결, 미사일협상진전 등과 연계되어 있어서 북한에 대한 서방세계의 MFN부여와 GSP 혜택은 요원한 실정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9.4), p.5에서 참고.

17) 통일부, 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2002. 11).

표 3. 북한의 대중국·일본 무역실적.

(단위 : 천\$)

구분	2002년도			2001년도			증감율(%)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중국	201,158	75,812	125,346	148,845	23,595	125,250	35.1	221.3	0.1
일본	104,075	70,593	33,482	91,690	57,682	34,008	13.5	22.4	-1.5
합계	305,233	146,405	158,828	240,535	81,277	159,258	26.9	80.1	-0.3

자료 : 통일부, 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2002. 11).

(38.9백만달러, 1.803%), 의류 (11.8백만달러, 신규품목), 채유용종자(2.6백만달러, 1.819%) 등 임가공제품 및 농수산물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일본 수출 급증 품목은 어패류(28.8백만달러, 76%), 알루미늄 (1.3백만달러, 149%), 육·어류조제품(0.7백만달러, 62%), 플라스틱(0.4백만달러, 8%), 유리(0.1백만달러, 신규품목) 등이다. 즉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수출비중이 크면서 전년동기보다 증가한 주요품목 가운데 농수산물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 특징이다. 이 결과는 상대국 수요의 변동, 계절적 특수현상 등 외생적 요인에 영향을 입은 우연적·계절적 변동일 수도 있으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에 의한 무역급증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대중국·일본 무역은 매년 전체무역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이들 국가만으로도 북한의 전체 무역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다.

다. 농업기술 지원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되고 있는 식량난의 원인을 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거둬진 자연재해와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지원 감소 등에서 식량난의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고수해 온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일순간에 포기할 수 없는 고충에 따른 것이며 식량난의 근본적 원인이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농업을 대표하는 용어는 주체농업 혹은 주체농법이다. 1964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전체회의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된 이후 북한의 농업은 주체

농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체농업은 적지적작과 적기적작을 원칙으로 한 농업전반에 대한 북한식 강령이나 마찬가지로다. 사실 각지의 기후와 토양을 비롯한 환경적 요인, 인력과 제도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영농할 수 있다면 이는 가장 효율적인 농법으로서 최대의 토지생산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념과 연계된 주체농업이 유연성을 상실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될 때 주체농업은 주체농업이 아니라 가장 비과학적, 비효율적 농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북한의 주체농업도 수십년이 경과하면서 경직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식량난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핵심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북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국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이나 협력이 불가피하고, 이 문제에 대한 남한 내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면 지원이나 협력의 방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일회성 지원이나 협력보다는 북한의 농업생산능력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농업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우선 사회주의의 제도적 개혁, 농업기반의 정비, 적정량의 투입요소 확보 및 기술진보 등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개혁, 기반정비, 투입요소 확보 등의 문제를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다. 그러나 기술지원 혹은 기수협력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타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제주도는 2000년에 씨감자 3,000개를 북한에 지원하였는데 이는 500ha를 재배할 수 있는 양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100여억원을 들여 2002년에 농산물원종장을 개장하였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청정환경을 배경으로 우량종자의 생산과 신

품종 개발이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주소득 작목인 감자를 비롯하여 백합, 양파, 당근 등 겨울 채소류의 우량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실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북한과 농업기술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원 가능한 분야로는 분무경양액재배 및 심지재배 등에 의한 고품질의 감자종묘 생산 기술, 조직배양에 의한 백합 등의 화훼류 증식기술, 유리온실 등을 이용한 시설재배기술, 양어·양식기술 등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과 협의하기에 따라선 북한의 농업기술자나 농민을 초청하여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연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도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한 농업인교육이 450여명에 이르며¹⁸⁾ 북한의 농업기술자 혹은 농민들과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한간 대립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어 민족의 보다 나은 내일을 여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실현해 나가야 할 민족사적 소명이다. 따라서 주변 강대국의 간섭이 어떠한지, 남한 내부에서 의견대립이 상존하든, 장기적으로 교역·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한 분단상황의 안정적 관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다. 특히 북한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식량문제라고 할 때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는 것은 논리의 범주를 넘는 당위의 귀결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주도의 대북 농산물 교역 및 협력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협력현황과 한계, 제주도의 특성을 살린 대북 교류 및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주도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제주도의 평화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제주

도의 주요 생산물인 감귤과 당근가격의 가격안정에 기여하며, 미래시장의 개척에 도우며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에 감귤과 당근 보내기 사업을 시작했다. 1999년부터 시작된 감귤과 당근 보내기 사업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감귤 13,572톤, 당근 6,000톤 등 총 2만여톤에 이르는 농산물의 대북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3년에도 4천여톤의 감귤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도의 이 같은 협력사업은 결실을 맺어 2002년에는 북한의 초청에 의해 두 차례나 제주도민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제주도 한라산연구소와 북한 천지연구소의 교차 학술탐사를 비롯한 농수산, 관광분야 등 여타 협력사업의 확대를 기약하기에 이르렀다.

경비확보방안이 마련되면 다음 단계에선 협력의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다. 직접교역 혹은 협력사업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할 경우 식량과 관련된 교역 또는 협력사업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주도의 특수한 지리적, 생산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식량의 교역이나 협력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감귤을 포함한 과수, 당근, 양파, 마늘 등의 채소, 일부 특용작물 등의 교역이나 협력사업은 가능하다. 특히 과수와 채소는 노동집약적 경영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원의 형태를 넘어서 기술지원, 계약재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만약 농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면 가공·수송산업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 현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클 것이다. 특히 공단조성, 관광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들 사업분야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안정적 공급원도 될 수 있으므로 제주도가 주체가 된 과수와 채소 분야의 협력형태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의 협력사업이나 교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상품성이 있는 반출입 가능한 품목이 부족한 데 있다.

따라서 직접교역이나 협력사업 이외 간접교역이나 협력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북한내 공동영농 혹은 계약재배의 모색, 해외시장 공동진출, 농업기술분야에 대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북한내 공동영농 혹은 계약재배는 원산지 증명명확성, 생산물 처리방법의 다양성 등 많은 장점을

18) 제주도 농업기술원, 2002년도 농업인 교육안내, www.agri.jeju.kr/qna/view.asp?db.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면 좋은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모 외, 1999. 남북한 농산물 계약재배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영훈, 1998. 남북한 농업협력의 제약요인과 접근방향. 북한농업연구, 제5호, 북한농업연구회.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2002. 내부자료.
- 신동완 외, 1998. 북한의 농업기술. 오성출판사.
- 서재진, 1992. 김일성 이후의 정책방향. 북한의 권력구조와 김일성 이후 정책방향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 유재현 외, 1999. 북한의 농산물 교역실태와 남북한 교역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홍택기, 2000. 「남북한 해외 농산물시장 공동 개척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일부, 2001. 「2001 통일백서」.
- 통일부, 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 2002.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대중국·일본 수출 급증.
- 농림부, 농업관련 주요통계(www.maf.go.kr/hdml/pdf/pds-01-06.htm).
- 종합무역정보서비스, 한국무역통계(www.Kotis.net/main/tradedb.html).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 비교통계(www.kosis.nso.go.kr/cgi-bin/sws-999.cgi).
- 통일부, 교류총괄과, 남북협력기금통계(www.uni-korea.gp.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통계(www.krei.re.kr/north/statistics11-